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0424    |
| 의 퇴 인 | 김위상 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4.8.29. |
| 추계번호  | 24B0699    |

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,000만원, 2030년 6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원(연평균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안 제13조의3(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) | 60   | 60   | 60   | 60   | 60   | 300 | 60  |

주: 1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 
 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
 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3조의3<br>(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) |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3조의3(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) | ○    | —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<sup>1)</sup>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 -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<sup>2)</sup>

1)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의2(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)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 "성희롱 예방 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2)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6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.

1. 사업주단체

2. 「공인노무사법」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

3.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

4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·교육 시설

- 2023년 기준 지정 현황: 전체 122개소(노무법인 69개소, 민간단체 15개소, 연수·교육시설 28개소, 사업주단체 10개소)
- 고용노동부는 「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(지침)」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교육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음
  - 점검주체: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
  - 점검대상: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
  - 점검주기: 연 1회 이상
  - 점검방법: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현장 점검
  - 근거규정: 「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(지침)」
  - 점검내용: 지정요건 충족여부(대상기관의 적정성, 적정강사 보유 여부 등)와 교육의 적정성(교육실적, 교육 내용·방법 등)을 점검
  - 점검실적: 2023년 기준 총 108개 기관을 점검하여 적격 강사 미보유 기관, 강사 보수교육 미실 시 등 6개 기관에 시정지시 또는 행정지도
-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,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 -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음
  -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에 대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   - 이에 본 추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

[표 2] 교육기관 평가 관련 연구용역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행기관     | 연도   |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|
| 위생교육기관 평가 및 개선방향 마련                 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24 | 60 |
|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<br>보수교육기관 평가방안 연구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2023 | 60 |
|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60 |

자료: 나라장터, 2024년 8월 21일 접속

-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,000만원, 2030년 6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원(연평균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안 제13조의3(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) | 60   | 60   | 60   | 60   | 60   | 300 | 60  |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
 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
 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남 희 | 배야형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|
| 남 희 | 02-6788-3737 | nhee@na.go.kr |